

제 425 호

1974.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812 호 :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
◎ 훈령	
제 379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3
◎ 공고	
제 1 호 :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실시공고	3
제 128 호 : 역촌, 창동, 망우, 김포, 시흥 및 도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공고	5
◎ 예규	
제 266 호 : 갱송업무취급지침	5
◎ 사령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812 호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610 호 (1970. 3. 16)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974. 1. 10

서울특별시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 379 호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수사란 제 6 호중 계장 건결을 과장 전결로 한다.

1974. 1. 8

서울특별시

부 칙

이 규정은 1974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1 호

제 1 회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실시시공고

1974 년도 서울특별시 시행제 1 회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을 보건사회부령

제 428 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6 조제 5 항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4. 1. 1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시 령

가. 필기시험 : 기초간호학개요, 보건

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관계
법규

나. 실 기 시 험

2. 응 시 자 격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간호보조원
훈련과정을 이수한자

3. 구 비 서 류

가. 응시원서 (소정양식에 수입증지
1,000원첨부) 1통

나. 간호보조원 수료증명서 1통

다. 건강진단서 (시립병원장 발행)
1통

라. 신원증명서 1통

마. 사진 (상반신명함판 출원전 6월
이내 촬영) 5매

바. 최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
본 1통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4. 1. 28 ~ 1. 31 (4일간) 서울
특별시 보건예 방과

5. 시험표 교부 및 장소

74. 2. 6 ~ 2. 8 (3일간)

서울특별시 보건예 방과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1) 필기시험 : 74. 2. 10 (일)

10:00 - 11:40 (90분)

2) 실기시험 : 74. 2. 11 (월)

09:00 - 17:30

나. 장 소

1) 필기시험 : 한양공업고등학교 (성
농구 신당동 251)

2) 실기시험 :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용산구 한남동 8~45소재)

7. 합격자발표

74. 2. 15 (금요일) 14:00 시청후정계서판

8. 기타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필요한 필
기도구 (청, 흑색볼펜 또는 만년필)
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09:00 까
지 시험장소에 집합하여 시험감독
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
건사회국 보건예 방과에 (75-664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부공고제 128 호

건설부공고제 8,9 호 및 11 호 (67.1.21) 및 제 8 호 (68.1.23) 에 의하
여 사업시행인가한바있는 역촌, 창동,
망우, 김포, 기흥 및 도봉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 34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인가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3.12.27

건설부장관

가. 변경사항 (사업시행기간) :

지구명	당 초 시 행 기 간	변 경 시 행 기 간	비 고
역촌	1967.1.21 - 73.12.31	1967.1.21 - 74.12.31	1년
창동	1967.1.21 - 73.12.31	1967.1.21 - 74.12.31	"
망우	1967.1.21 - 73.12.31	1967.1.21 - 75.12.31	2년
김포	1968.1.23 - 73.12.31	1967.1.23 - 75.12.31	"
기흥	1968.1.23 - 73.12.31	1967.1.23 - 75.12.31	"
도봉	1968.1.23 - 73.12.31	1968.1.23 - 74.12.31	1년

나. 기 타 : 관계서류를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시생략)

예 규

◎ 예 규 제 266 호

쟁송업무취급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등
사업소장을 당사자로하는 행정소송사건
에 관하여 그수행절차와 업무취급관계

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쟁송업무
취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 송 업 무

가. 구청장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구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행
정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총무과 (기획계) 소관

(가) 쟁송사건 서류접수 분류이
송

①기획계에서 주관과에 이송할때
에는 송무전 양식별첨 1 참조
이송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구청장이 주관과를 지정한다.

(가) 2개 이상의 실·과에 관련된
사건

④주관과가 불분명한 사건

③송무전 양식별첨 1 참조

(나) 정송사건 심사합의

①소송주관과에서 정송에 관한
방침을 얻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
과장(기획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계에서 심사합의를 할때에
는 합의문서 우측에 송무심사인을
날인하고 정송사건심사부를 비치하
여 합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송무심사인 별첨 2 참조

④정송사건심사부 별첨 3

참조

(다) 소송수행자 지정 및 발급

①주관과에서 소송수행자 지정
의뢰가 있을때에는 심사여부를 확인
한후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②소송수행자지정서 양식 별첨
4 참조

(2) 사건주관과

(가) 응소 또는 상고방침

구청장이 피소되었거나 상고코
자할때에는 다음에 의거 방침을 얻어
야 한다.

①제 1 안 내부결재

사건(사건번호, 사건명, 원, 피고명)
을 표시하고 사건개요를 적시 한후
응소 또는 상고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 2 안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의회
사건주관과장은 총무과장(참조 기획
계장)에게 응소방침문 사본 및 소송
수행자 지정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수
행할 직원의 직성명(관계계장 및 직
원을 원칙으로 함)을 기재하여 의
뢰토록 한다.

③제 3 안 소송수행자 지정승인

요청
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응소
또는 상고방침문 사본을 첨부하여

피소 또는 상고보고와 아울러 소송 수행자 지정승인 요청을 한다.

④제 4 안 행정소송 피소 또는 상고보고

제 4 항 타기관에의 보고 *가* 항에 의거 소송계류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나) 소송 수행자

①소송수행자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사급 직원 1 인과 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송사건의 판결이 당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당시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할수있으나 사전에 시장(법무담당관)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받아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임장 양식별첨 5참조)

(다) 소송수행자의 임무

①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②소송자료수집 조사제출

③답변서, 준비서면등의 작성 제출 및 입증

④변론기일에 출정답변 및 복명

⑤감정시입회 및 보고

⑥소송기록의 작성 보관관리

⑦각종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시행 및 보고

⑧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의 정리 및 처리

(라) 소송진행보고

소송진행 보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피소보고

숫자가 접수된 때에는 기일소환장

<p>및 숫장사본과 응소방침사본을 첨부 소송수행자 직 성명을 표시하여 수행자 지정승인요청과 동시에 피소 보고하여야 한다.</p>	<p>㉔ 상고장을 제출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코자 할 때에는 제출 3 일전에 시장 (참조 법무담당 관) 에 사본첨부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진행 보고 ①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 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 3 일전에 그 사 본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p>	<p>㉕ 원고측에서 상고할 때 에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및 상고장 과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즉시 그 사본을 첨부 시장 (참조 법무담당 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상대방이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 또는 준비서면등을 접수한 때에 는 사본첨부하여 보고한다.</p>	<p>㉖ 원고측에서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때에 는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㉗ 각종기일 (변론, 견증등) 에 출정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이 경우에도 제출 3 일전에 사 본첨부 시장 (참조 법무담당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판결보고 판결문이 접수된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되 시장에게 보고시에는 상소여부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의견을 첨기하여야 한다.</p>	<p>나. 보전소장 기타 사업소장이 당사자인 경우 보전소장 또는 기타 사업소장 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사건 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p>
<p>⑤ 상고보고 1 심판결에 불복상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고방침을 득하여 소송을 수행하되 ①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2 주 일내에 상고하여야 하며</p>	<p>(1) 민원봉사실 (과제가아닌 사업소는 주무계) 가 (1) 할과 동일 (2) 사건주관과</p>

<p>가 (2) 항과 동일 다. 기타 사항 (1) 본지침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의거 처리할것이며 (2) 소송수행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을때에는 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하여 협조를 받아 조치할것 3. 소원 업무 가. 구청장이 처분한데대한 소원장을 접수한 때에는 10 일 이내에 변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첨부하여 총무과장 (기획계) 의 심사를 거쳐 시장 (참조업무주관과)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나. 위변명서를 작성할때에는 6 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그에 관련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타기관에서 처분한데대한 소원장을 접수할때에는 즉시 당해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 소원장에 흠결이 있을때에는 반려치 말고 기간을 정하여 (약 1 주간) 보정지시하되 보정지시할때에는 반드시 위기일내에 보정치 아니할때에는 소원을취하한것으로 간주처리하겠음 을 첨기토록할것 마. 기타사업소장의 처분에대한 소원장을 접수할때에는 주무과 (또는주무계) 의 심사를거쳐 위각항에의거 처리할것 4. 타기관에의 보고 가. 검찰청에의 보고 행정소송은 소송계류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고법인경우에는 서울고등법</p>	<p>찰청검사장 대법원인경우에는 대검찰청 총장) 에 피소 진행판결 및 상고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 33 조의 규정에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 일 이내에 숫장 또는 판결문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호 감심의 142-3474 호 1966. 9. 20) 다. 총무처소청심사 위원회에의보고 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숫장 또는 판결문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사항을 총무처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기자의 소속, 직, 성명 (2) 제소일 사건번호 (3) 판결된 때에는 판결일 및 그 주문 5. 시행일 이에규는 1974.1.1 부터 시행한다.</p>
--	--

별첨 1

송 무 용 전

수 신

과 장

197 . . .

사 건 명

사전번호

원 고
과 고

본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적 기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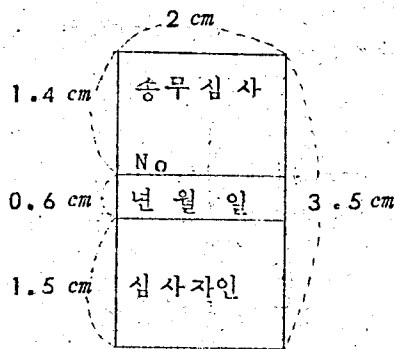
- | | | | |
|--------------------|---|---|-----|
| 1. 소방침결정 | 년 | 월 | 일까지 |
|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뢰 | 년 | 월 | 일까지 |
| 3. 증거제시 | 년 | 월 | 일까지 |
| 4. 증인신청 | 년 | 월 | 일까지 |
| 5. 기 일 | 년 | 월 | 일까지 |

과 장

2 부작성 하되 첫째장은 미봉지로

별첨 2

송 무 심 사 인



별첨 4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5 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3.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 1 특별부

서 기 19 년 월 일

피 고 서울특별시

○ ○ 구청장 ○ ○ ○ 직 인

(보전소장)

서울고등법원 제 1 특별부 귀중

2 부로하되 첫째장은 미봉지로

197 년

소 송 위 임 장

당 사 자 { 원 고
회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동) 가 번지 호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하기 권한을 수여함.

- 1. 일체의 소송행위
-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3. 재판상의 화해
- 4. 복대리인의 선임
- 5. 목적물의 수령
- 6.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7.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서기 197 년 월 일

주소 서울특별시

위임인 서울특별시

구 청 장 (보 건 소 장)

직 인

사 령

◎ 1974.1.1.

인 사 과 행정주사 조성두
행정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대 통 령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김태수
교 수 부
행정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사무과
경리계장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과 지방행정 조성두
사무관
용산구산업과장에 보함.
지방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학과지도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4.1.4.

경기도연천군 지방행정 민병천
주 사 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 1974.1.5.

성 북 구 지방행정 이범산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1.2호의
규정에의하여 감봉1월에처함.
성북구근무를명함.

영 등포구 지방행정 조규식
보 건 소 주 사
지방공무원법제69조1.2호의
규정에의하여 전책에처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행정 장영덕
보 건 소 서 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1.2호의
규정에의하여 감봉1월에처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행정 김풍원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동대문구근무를명함.

지방행정
의약과 주사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지방행정
남대문구근로지회관 주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지방행정
영등포구보건소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
에 처함.

지방행정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
월에 처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
서대문구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정인국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 1974.1.6.

지하철 지방토목기사 이우빈
건설본부

지방토목기과로 추서함.

김명호

◎ 1974.1.8.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오남식
총무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결정에따른 73.8.18

자(발령제 776호) 직위해제

를 동일자로 취소하고 73.

8.30자(발령제 800호) 징계

처분(파면)을 동일자로

변경 견책에 처함.

황종선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신두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결정에따른 73.11.29

자(발령제 1104호) 징계처분

(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 견책에 처함.

박지철

<p>구획정리 2과(휴직중) 지방토목 부직을 명함. 마포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5호봉을 급함.</p>	<p>윤수길 중구근무를 명함. 권정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구획정리 1과파견(74.2.28 까지) 근무를 명함.</p>	<p>정구부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황순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북악공원 관리사무소 지방토목 기원보 구획정리 1과파견(74.2.28 까지) 근무를 명함.</p>	<p>김무현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방명옥</p>
<p>용산구보전소 지방보전기원 남부병원파견(74.3.31까지) 근무를 명함.</p>	<p>한중수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건축기원 주택건설과파견 근무를 해제함. ◎ 1974.1.9.</p>	<p>전유영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구획정리 2과 지방토목기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개량 2과 지방건축기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곽일영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 1974.1.15 경기도 지방토목기 양주군구리읍 원보시보 조보연</p>
<p>◎ 1974.1.10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p>	<p>이연관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15-15